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8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패션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를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1년(2013. 3 ~ 2014. 2)
- 위탁업무
 - 국내 최정상급 및 차세대, 신진 등 단계별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 서울컬렉션, 패션테이크오프, 제너레이션넥스트
 - 바잉쇼 개최 : 해외바이어 수출목적의 소규모 프레젠테이션 쇼
 - 수주박람회 개최 : 중소 패션업체 부스전시 및 수주상담회
- 소요예산 : 3,800백만원(2012년) / 3,700백만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2012 서울패션위크 개최 종합 계획(문화산업과-856, 2012. 2. 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0.8.8 ~ 2003.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차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3차 : 2006.8.8 ~ 2009.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4차 : 2009.8.8 ~ 2011.12.31(2년5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7 ~ 2013. 2. 28((주)피플웍스 프로모션)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산업 발전과 디자이너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바이어, 프레스를 초청, 최정상급부터 신진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망 디자이너들의 수주패션쇼 및 수주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연 17만명(춘·추계)의 관람객과 40여개국 3천여명의 프레스·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패션행사임.
-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내외 패션업계 및 바이어, 프레스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대규모 패션사업의 경험과 전문성, 실행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본 동의안은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패션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를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춘계와 추계, 연 2회에 걸쳐 국내 최정상급 및 차세대, 신진 등 단계별 디자이너 패션쇼와 중소패션업체 전시 및 수주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연중 해외 바이어와 프레스를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참가업체들을 관리하는 사무 등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연 17만명(춘·추계)의 관람객과 40여개국 3천여명의 바이어와 프레스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패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패션업계 및 바이어, 프레스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대규모 패션사업의 경험과 전문성, 실행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200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2010년 국비보조 20억원 포함 50억원, 2011년 국비보조 16억원 포함 40억, 2012년 국비보조 없이 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방콕 등 신흥 아시아 패션위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4대 패션위크에 이어 세계 Top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패션산업 육성 예산 105억원 중 38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춘계와 추계 연 2회의 서울패션위크 개최에 투입하는 만큼 패션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운영 기반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패션위크 개최 지원사업 예산구조

2012년 예산 : 3,800백만원

항 목		금 액
세부 프로그램 실행 (연 2회)	서울컬렉션, 패션브릿지	1,200백만원
	서울패션페어	600백만원
	제너레이션넥스트	400백만원
	해외교류프로그램	200백만원
	패션관련 부대행사	400백만원
홍보·마케팅 (연 간)	연간 홍보·마케팅 지원 관리 프로그램 참가업체별 실적관리(분기별)	250백만원
평 가	디자이너 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등	70백만원
해외 바이어 · 프레스 초청 및 운영, 관리 등		650백만원
각종 공고,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제반 운영 및 관리 등		30백만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지원사업 2011년 실적

구 분	참가업체	프레스바이어	수주실적	국내외 홍보(건)	관람객
총 계 (‘11.3.28~4.2)	138	19개국, 1,467명	375만USD	3,400	82,400
추 계 (‘11.10.17~10.22)	130	22개국, 1,700명	425만USD	4,000	86,3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언제까지 민간영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예정인가.

답변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위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38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패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년(2013. 3 ~ 2014. 2)
- 위탁업무
 - 국내 최정상급 및 차세대, 신진 등 단계별 디자이너 패션쇼 개최 : 서울컬렉션, 패션테이크오프, 제너레이션넥스트
 - 바잉쇼 개최 : 해외바이어 수출목적의 소규모 프리젠테이션 쇼
 - 수주박람회 개최 : 중소 패션업체 부스전시 및 수주상담회
- 소요예산 : 3,800백만원(2012년)/ 3,700백만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2012 서울패션위크 개최 종합 계획(문화산업과-856, 2012. 2. 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0.8.8 ~ 2003.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차 : 2003.8.8 ~ 2006.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3차 : 2006.8.8 ~ 2009.8.7(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4차 : 2009.8.8 ~ 2011.12.31(2년5개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 3. 7 ~ 2013. 2. 28((주)피플웍스 프로모션)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산업 발전과 국내 디자이너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바이어, 프레스를 초청, 최정상급 디자이너부터 신진디자이너에 이르는 국내 가장 유망한 디자이너들의 수주패션쇼 및 수주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연 17만명(춘·추계)의 관람객과 40여개국 3천여명의 프레스·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패션행사임
-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내외 패션업계 및 바이어, 프레스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대규모 패션사업의 경험과 전문성, 실행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건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